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9(월) / 총 2매
담당 부서	신교통서비스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사무관 최규용 ·☎ (044) 201-3817, 3820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자동차 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 편익은 높이고,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(연합뉴스, 12.08) >

◆ 이재웅, 2012년 정부 ‘렌터카 활성화법’ 추진 거론...“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”

-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12년에 입법예고하였고, 2013년에 발의하였습니다.
- 이는 관광·장거리 운행, 운전 미숙자 등 다양한 대여 수요에 부응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, 당시에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금지되었고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.
-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업역간 영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~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임차인에 대해서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였습니다.

- 그러나 당초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의 개정취지와 기대효과와 달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 논란이 발생하고,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어,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대책을 마련하였고,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
- 개정 법률안은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'타다'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도 당초 법령 취지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,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,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,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신교통서비스과 최규용 사무관(☎044-201-382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